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5나2074518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5나20745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가합52956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변론 종결 2016. 9. 8.

판결 선고 2016. 11. 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가합52956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9.1 단서 조항에서 예외사유를 규정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 중에서 두 번째 예외사유(이하 '이 사건 예외사유'라 한다)는 원고의 법령상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서로써 승인거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9.1 단서 조항의 문언과 그 체계 등을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외사유는 원고가 법령상 대주주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문서로 그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원고의 귀책사유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0~11행의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부분을 "갑 제6,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9~21행의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부분을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 것은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따라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피고가 위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고쳐 쓴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것은 원고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어서, 민법 제537조1)가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9조 9.1 단서의 내용 등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것이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예외사유 등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위 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그와 달리 임의규정인 민법 제537조가 이 사건 계약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승인을 얻는 것은 원고와 피고의 공통의 의무라고 할 것임에도, 그에 관하여 최종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2016. 9. 21.자로 제출한 참고서면 및 그에 첨부한 자료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재판장판사배광국

판사임영우

판사최한순

1)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